

세무 보수표

한의원 전문 <한케어세무회계사무소>

수입금액구간	기장수수료 (매월청구)	조정수수료 (종합소득세신고시 1회청구)	비고
5천이하	100,000	270,000	성실신고확인대상 (성실신고확인비용은 조정료와 별도로 6월 달에 1회청구)
5천초과~1억이하		270,000~405,000	
1억초과~2억이하		405,000~567,000	
2억초과~3억이하		567,000~729,000	
3억초과~4억이하	110,000	729,000~864,000	
4억초과~5억이하	120,000	864,000~999,000	
5억초과~6억이하	140,000	999,000~1,107,000	
6억초과~7억이하	155,000	1,107,000~1,215,000	
7억초과~8억이하	170,000	1,215,000~1,323,000	
8억초과~9억이하	185,000	1,323,000~1,431,000	
9억초과~10억이하	200,000	1,431,000~1,539,000	
10억초과~20억이하	1억증가시마다 2만원증가	1억증가시마다 7만원증가	

- ① 상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.
- ② 기장수수료를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말하며, 기장수수료의 조정시기는 매년 2월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③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조정수수료외에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추가로 적용됩니다.
- ④ 세무조사 수임시 조사대응 수수료는 별도로 청구됩니다.
- ⑤ 한케어세무회계사무소는 한의원만 취급하는 한의원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.
- ⑥ 이 세무보수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, 당사와 계약된 원장님에게만 제공됩니다.
- ⑦ 세무사사무소의 수수료는 부동산 수수료와 달리 법으로 금액을 통일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소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